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356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3561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19가단15438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주영, 황인준

변론 종결2022. 8. 25.

판결 선고2022. 9. 29.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19가단15438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33,907,1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07,1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1. 목록"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미리

판사조윤신

판사조미옥

별지